
입 법 정 보

2019-2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
4.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6
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6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9
13.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
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
1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
1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4
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9.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16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7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9
2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20
2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2
2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3
2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33. 마린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7
3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7
3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7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8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8.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29
39.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30
4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32
4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35
4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7
4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4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4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9
4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40
49.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0
5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1
5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1

정부입법 예고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0. 28. • 마감일자 : 2019. 12. 9.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토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을 규제의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18조제1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안전교육)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한 제21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0. 28. • 마감일자 : 2019. 12. 9.
-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28. • 마감일자 : 2019. 12. 9.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운용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
- 주요내용
 - 가.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9조제2항)
 - 1)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지분증권 허용

4.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9. • 마감일자 : 2019. 12. 9.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실시한 「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인감업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민원서식 개선 공모제안 인감관련 개선사항 반영
 - 1)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개선 -> ‘인감’ 란을 ‘인감 또는 서명’ 으로 바꾸고 서명 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를 첨부하도록 안내
 -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 위임사유를 위임자가 기재하여야하는 항목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서식 개정
 -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서식내용 보완
 - 1)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자필 명기 -> 위임장 작성 시 “자필” 로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위임자 자필” 로 수정하여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

- 2) 수감기관 직인표기 추가 ->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표기가 없어 직인 없이 교도관 확인만 받아 제출할 경우 수감기관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인

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10. 29. • 마감일자 : 2019. 12. 9.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용수 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경 함

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0. 29. • 마감일자 : 2019. 12. 9.
- 심신장애자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역심의회에서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 등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3조 제4항 신설)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29. • 마감일자 : 2019. 12. 9.
- 신속하고 적정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금 환수 기준을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는 한편,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개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1)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의 적정성 검증 및 신속한 환수 결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령 제31조의2)
 - 1)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29. • 마감일자 : 2019. 12. 9.
-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등)

1)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건설업·별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다음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별지서식 정비 (별지 제2호서식 등)

1) 4대 사회보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30. ● 마감일자 : 2019. 12. 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관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관련 제출 서류 등(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마목, 제10조제2항제5호)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30. ● 마감일자 : 2019. 12. 9.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류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추가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2항제4호,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30. • 마감일자 : 2019. 12. 9.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9.8.22.)에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46” 에서 “667” 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89.7 원” 에서 “195.8원” 으로 각각 변경함

1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0. 30. • 마감일자 : 2019. 12. 9.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관련 절차가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명예전역일을 수당 지급일로 함. 군인 명예전역수당과 보수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 다음달 1일로 함.

○ 주요내용

가.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7조제2항 개정)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을 명예 전역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의 다음달 1일로 개정함.(안 [별표1] 비고1. 개정)

13.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0. 30.

● 마감일자 : 2019. 12. 13.

○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기간 연장 근거 확보, 전산자료 열람 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확대 근거 확보

○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체계의 공동 구축과 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제10조)

1) 현재 교육부 및 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의 백업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지 백업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재해복구체계는 구축하지 못한 실정

2) 이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공동 또는 통합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건축비, 시스템 구축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3) 재해복구체계 공동 또는 통합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복구체계 구축 근거를 확보하고, 재해 또는 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재해복구체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이를 통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기간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3항)

1)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하는 경

우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여 졸업생에 대한 열람은 제한하고 있음

- 2)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직후에 이전 학교 급에 기재된 출결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본인 학생정보 확인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학년초 일선 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3)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진학생의 경우 졸업 직후에 한하여 일정기간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일선학교의 행정이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함
- 다. 공인인증서 대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 1) 국정과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반영 필요
 - 2)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은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 3) 따라서, 전산자료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선함
- 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2항)

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2. 10.
-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장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유·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여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포함하여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2. 10.

-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임신점진 목적 특별휴가 사용방법 개선,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 완화 등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공무상 질병 휴직자·병가자의 연가가산제도 적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교육 실시(안 제3조 제4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근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2) 소속 공무원 근태에 대해 주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감사기구 후속조치 및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

나.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출장의 의미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출장기일 변동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라.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3항)

1) 공무상 질병휴직·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연가가산을 받도록 하여, 직무에 전념한 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2) 1개월 이상 교육파견, 대기발령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제외

마. 연가사용촉진제 사용 시기 및 기한 확대(안 제16조의2 제2항)

- 1) 연가사용촉진제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일수의 통보시기 및 촉진일수의 사용시기 통보기한 확대
- 바.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10항)
 - 1)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2) 남성 공무원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20조의 제13항)
 - 1)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 아. 임신검진 특별휴가 분리·신설(안 제20조 제14항 신설)
 - 1)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2)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특별휴가로 분리·신설
- 자. 병가 사용시 증빙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4항 신설)
 - 1) 6일 이하 병가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근거 마련
- 차. 시간선택제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24조의 3, 별표 3)
 - 1)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설정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수업휴가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개선

1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2. 10.
-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 관련 요양비 청구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2. 0.
-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8. 8.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국외 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자원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 설정(안 제1조의2 신설)
 -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될때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함
 - 2) (개정 사유)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를 설정함
 -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2등급 목록 내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을 포함(안 별표 1 개정)
 - 1) (개정 주요내용)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반출되지 않고, 승인 목적 내 활용하도록 농업생명자원 보존가치 2등급으로 분류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고자 함
 - 2) (개정 사유)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 자원은 동물약품 및 진단키트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므로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

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2. 10.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간소화(안 제18조)

- 1)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 하여야 하는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 1)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다.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의4 내지 안 제37조의 6)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안 제51조)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9.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2. 10.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대학의 기준을 공간정보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치된 학교로 완화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에서 학교로 확대 및 차별성을 없애고자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대학의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1) 현행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로 완화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0. 31.

● 마감일자 : 2019. 11. 20.

-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 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음.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강제노동 사용 금지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복무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약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징병제 하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인점, ILO에서도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 의사 등 타 보충역과는 달리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강제노동 협약(제29호) 비준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요원 및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 을 부여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협약과의 상충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1) 현장시험 강화로 인한 품질인증 시험결과 통지 처리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30일 연장 함

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6호서식)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 함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

• 마감일자 : 2019. 12. 11.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1조)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만 한정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 제1항제2호, 11조제5호)

다.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 제1호)

라. 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

- 1)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3(압류등록)에서, 압류등록의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이고,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르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 30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모터보트 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바. 보험가입대상 명확화(제25조)

- 1)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보험가입의 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규정

사. 안전검사원의 자격기준 중 학력기준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화(제26조)

- 1)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전검사 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하고, 안전검사원의 자격 기준 중 학력기준을 확대
- 아. 수상레저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목록 규정 신설(제38조의3)

- 1)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행정조사의 합리화 차원의 사업자의 제출할 서류목록을 명확히 규정

자.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안 제39조)

- 1)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2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11. 4.
- 마감일자 : 2019. 12. 16.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마련(제1조의2)

- 1) 기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력장치를 부착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출현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개념이 법률상 정의 개념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

나.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기간 확대(제1조의4)

- 1)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동력수상레저 조

○ 주요내용

가.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안 제35조의2)

1) 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나. 일몰도래 규제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1)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4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제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제8호)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해제

2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1. 4.

• 마감일자 : 2019. 12. 16.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공고 효과가 미비한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19.8.27. 공포, ' 20.2.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 개정(안 제37조)

1)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 행위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1)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현행 1차 표시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에서 1차 1월, 2차 인증취소)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10조)

1)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법 제24조제5항에서 법 제24조

해당 인증기관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별표 4)

4) 인증기관, 인증시설의 불명확한 취소 사유 삭제(별표 4, 별표 6)

다. 농산물 등급 등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 을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별표 22)

라. 검정항목(법 제98조)에 ‘품종’ 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1)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128조(검정방법)에 ‘품종’ 추가

2) 검정항목·검정기관 지정기준에 품종을 추가하며 검정실의 면적을 완화하고 검정인력의 자격기준 개선(별표 30, 별표 31)

3)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을 추가하고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를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별표 33, 별지 제75서식)

마.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수정 (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의2, 제25조, 제47조, 제49조)

2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1. 5.

• 마감일자 : 2019. 12. 16.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를 면제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면제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면제 관련 절차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규정(안 제73조제3항 신설)

1) 사업장 입지 현황 및 도면, 빗물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

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념사업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법인까지 기념사업 경비보조대상에 규정(안 제17조 개정)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1. 6.
- 마감일자 : 2019. 12. 16.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규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 12. 31.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 및 정비하려는 것임.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6.
- 마감일자 : 2019. 12. 16.

○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는 수익 모델 기반의 공모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운행감축률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지역도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수소경제 로드맵 지원 및 관계부처 권고 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낮은 휴일 등이나 시간대에는 운행감축률 확대를 허용하고,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에 정류장 확대와 수도권 이외 여타 대도시권에도 운행가능하도록 개선

나.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른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로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완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등 과목을 추가
다. 기타 법 개정 등 변경에 따른 명백한 조문 오류 등 수정

서 위임한 기계설비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 1)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 1)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 1)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 1)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 1)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 1)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 2)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

-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 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나.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 1) 엔진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다.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 1)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 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함

라.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3)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1)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함

바.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표 2)

-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바탕으로 할당하되, 처음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장의 초기 연도 할당량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함
- 2) 시·도지사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9조)

- 1) 총량관리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4)

- 1)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소재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2)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자. 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보고(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 1)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 협약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별표 5)

- 1) 대기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안 제30조)

- 1)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일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함

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검사방법(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1)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 및 판매하려는 보일러의 인증기준, 인증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 2)
- 1)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 마.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
- 1)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정함
 -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부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연속 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 등은 골똥 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바.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기준의 적용제외(안 제12조)
- 1)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 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기준 미적용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 사.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안 제13조 및 별표 4)
- 1)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안 제14조 및 별표 5)
- 1)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하도록 정함
- 자.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6)
- 1)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 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경비 지원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 1)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비지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안 제19조)

- 1) 대기관리권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등급 산정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차이의 정도와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동차 배출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타.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안 제20조)

- 1)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을 정할 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정함

파.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1조)

- 1)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하.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안 제22조)

- 1)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판매 금지,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으로 정함

4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1. 7.
- 마감일자 : 2019. 12. 17.

-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기 위함,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약사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제81조제1항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

4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7. • 마감일자 : 2019. 12. 17.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의 최근 소규모 주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LC 구조’ 및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한옥에 적용가능한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을 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 1)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 개정

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1. 7. • 마감일자 : 2019. 12. 1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중 연구공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분리구역)에 대한 인정요건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주요내용
 - 가. 독립공간이 아닌 분리구역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리구역 인정 가능 면적을 확대(30㎡ → 50㎡)

4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1. 8. • 마감일자 : 2019. 12. 10.
-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 주요내용

가.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토록 함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고, 발주처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을 발급하는 한편,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보를 발주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등록증명서 신설

5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1. 8.
- 마감일자 : 2019. 12. 18.

○ 범정부 미세먼지대책('17.9)의 후속조치로 향만지역에서 야드트랙터에 탱크로리 차량을 통한 액화도시가스 충전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그 외 기술검토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굴착공사 신고 등의 도시가스 안전 관리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5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1. 8.
- 마감일자 : 2019. 12. 18.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